

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

해외건설 시장개척!
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함께 합니다.

알아보기



사업목적

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업계의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하여
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
수주확대 도모

지원기간

신청일 ~ 최대 10개월

신청기간

수시 접수(매월말 당월 접수마감,
예산소진 시 접수종료)



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

지원사업



수주활동

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, 발주기관 면담, 발주처인사
국내초청 등 수주활동

프로젝트 조사분석

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
환경분석, 경제성,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·분석

EDCF 연계목적

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·분석

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

지원내용



지원항목

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,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

지원금액

-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
- 프로젝트 조사·분석 지원 등 최대 3억원

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

지원내용

지원비율

중소기업
총 소요비용의
80%

중견기업
총 소요비용의
60%

대·공기업
총 소요비용의
50%

※ EDCF 연계목적 및 조사·분석 지원, 정책지원,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은
지원 비율을 10%P 추가 지원

신청자격

- ❖ 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공사
- ❖ 해외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해외건설사업자
- ❖ 대기업·공기업은 중소기업·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
※ (제외되는 경우)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,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사업

신청서류

- ❖ 신청서 1부
- ❖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(제출서류는 hwp/pdf 등으로 USB 별도 제출)
- ❖ 신청예산 산출 「예산 내역서」 제출(참고자료 서식 참조)
- ❖ 발주처 인사 초청시 「초청 계획서」 제출(참고자료 서식 참조)
- ❖ 외주비/현지조사비 예산 「과업지시서」 및 「견적서」 제출
※ 외주비 2건, 현지조사비 3건(현지업체 2건, 국내 1건) 견적서 제출
- ❖ 발주처 사업지원 요청 공문 또는 MOU(수주활동 지원 신청 제외)
- ❖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
- ❖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- ❖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❖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
※ 중소기업 확인서, 중견기업 확인서

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

접수 및 문의



이메일

gimp@icak.or.kr

전화

02-3406-1141, 1103

주소

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
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